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2012년 4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포도 신품종 육종시험포장 확보를 위하여 시험포장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 이견으로 일부 토지의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매입토지를 변경·매입하고,
-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자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국방부에 양여하고, 국방부 소유 부지를 양수 받아 MRO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취득

《육종시험포장 매입부지 변경》

- 위 치 :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 1. ~ 12.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매입부지 : 당초 5필지 11,238㎡ → 변경 7필지 14,022㎡ →
- 변경사유 :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가격 이견으로 매입불가
- 변경내역 : 당초 5필지 11,238㎡ → 변경 7필지 14,022㎡ →

(단위 : ㎡, 천원)

당초 매입대상 토지			변경 매입대상 토지				비 고
소재지	면적	매입추진	소재지	지목	면적	매입(추정)가액	
계(5필지)	11,238		계(7필지)		14,022	394,435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0	2,059	매입	산계리 30	전	2,059	70,417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2	3,144	매입	산계리 32	과	3,144	109,732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3	2,321	매입	산계리 33	전	2,321	85,673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55	1,697	매입불가	산계리 54	전	2,068	47,564	변경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57	2,017	매입불가	산계리 59	답	1,653	33,060	“
			산계리 61	전	1,997	33,949	“
			산계리 62	전	780	14,040	“

《MRO사업부지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외평·외남동, 청원군 내수입 원통리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소요예산 : 7,802백만원(예비감정가) ※공시지가 3,422백만원
- 매입규모 : 80필지 118,555m²

《MRO사업 조성부지 무상양수》

- 위 치 :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9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 5. ~ 12.
- 양수재산 : 17필지 144,628m²
- 재산가액 : 8,928백만원(예비감정가) ※공시지가 7,159백만원
- 양 여 자 : 국(국방부)

나. 재산의 처분

《육종시험포장 매입부지 변경》

- 위 치 : 청주시 외평·외남동, 청원군 내수입 원통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 5. ~ 12.
- 양여재산 : 80필지 118,555m²
- 재산가액 : 7,802백만원(예비감정가) ※공시지가 3,422백만원
- 양 수 자 : 국(국방부)

4. 검토의견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포도 신품종 육종시험포장 확보를 위하여 시험포장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 이견으로 일부 토지의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매입토지를 변경·매입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자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국방부에 양여하고, 국방부 소유 부지를 양수받아 MRO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육종시험포장 매입부지 변경의 경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의 의결받은 사항으로 매매가격 이견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인데, 당초 계획 제출시 매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MRO사업부지에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2010년 심의·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안에 변경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매입 대체부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부. 끝.